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과 과장 최미애, 연구관 나기형 (509-7230~3)

올 추석 대목, 눈속임, 불량저울 사용 못해
– 기표원, 사·군·구와 함께 저울 특별점검에 나서

□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은 추석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**17개 시·도, 262개 시·군·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**을 실시한다고 밝혔다

○ 점검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,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**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, 전통시장, 정육점, 청과물점, 수산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**이다.

○ 금번 점검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단속 개념에서 벗어나, **성수기 시작 전 시장 점검을 통해 눈속임, 불량저울 사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**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따라서,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되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.

* 금년 2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3,57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이중 293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

○ 그러나, 불법개조, 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·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기술표준원은 추석 대목을 노린 정량미달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**식용유, 햄, 조미료, 설탕, 커피 셋트 등 약 230개 생활용품에 대한 실량검사도 병행**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생활용품에 대한 포장량(실량)의 오차를 조사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**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,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, 또, 과일,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**하는 경우에는 **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**해야 한다면서,

○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량 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 시, 관할 시·군·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나기형 연구관(☎ 02-509-72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자료 1 **2013 추석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지침**

1. 점검 개요

○ 점검기간 : 점검 기간 : '13.9.9~9.13(5일간)

○ 점검대상 : 상거래용 저울

○ 점검장소 :

-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
-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, 정육점, 전통시장 등

2. 주요 점검내용

○ **<저울>** 위조·변조·조작,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 위반사항
- (변조 및 조작여부) 봉인 훼손,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
- (검정 여부) 검정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
- (사용공차 초과) 법정허용오차 초과 여부
- (구조불량) 영점 조정장치 불량,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
- (정기검사 여부)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
- (저울훼손) 눈금판 파손, 수평장치 파손 유무

○ **<실량표시 상품>** 포장된 상품의 실량 오차 확인·조사
- 시중에 유통 중인 추석 선물용 상품의 실량확인(약 230개 상품)

3. 점검방법

○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등 특별점검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17개 시·도, 262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점검 실시

- 7개 특별·광역시는 우리원과 합동점검 실시
 * 우리원, 지자체, 검정기관, 계량측정협회 직원으로 합동점검반 구성
- 한국계량측정협회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는 명절 생활용 상품을 수거하여 포장량(실량)에 대한 오차검사 실시

○ 부정계량기는 「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 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"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"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

○ 변조 및 조작여부
-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, 탈락(손으로 확인)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
-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

○ 검정실시 여부
- 제작·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

○ 정기검사 여부
-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

○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
-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"0"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
-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

○ 비법정계량단위 사용,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
-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, 말 등의 사용 여부
-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
- 눈금판,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

○ 사용공차 초과여부
-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
 *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(500 g, 1 kg, 2 kg, 5 kg, 10 kg, 지자체별 준비)

-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(500 눈금 이하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, 2,000눈금 초과)

- 사용공차 :

 · 3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,000~5,000의 저울이며, 사용공차는 500 눈금 이하는 1눈금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는 2눈금, 2,000눈금 초과는 3눈금임

 · 4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,000개 이하의 저울이며, 사용공차는 50 눈금 이하는 1눈금,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는 2눈금, 200눈금 초과는 3눈금임

4. 점검결과 조치

○ 중대위반 : 위·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·중대 사항은 고발조치

* 위·변조, 미검정(제조사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*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단순위반 :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

* 단순위반 : 구조불량, 정기검사 미필, 단순 허용오차 초과
* 정기검사 미필, 단순 허용오차 초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,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유도

5. 기타 행정사항

○ 각 지자체별로 부정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

○ 저울 점검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

○ 점검전 전 오차측정 요령 등 점검방법 숙지

* 점검시 기술 또는 행정적 처리 문의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김창열센터장) 또는 '부정계량기 처리센터'에 문의

○ 자체점검반과 합동점검을 병행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정·장소 등을 합동점검반원과 협의·추진

참고자료 2 **2013 지자체별 '부정계량기 신고센터'**

기 관 명	부 서 명	연락처
서울특별시	민생경제과	02-2133-5375
부산광역시	기간산업과	051-888-6704
대구광역시	녹색에너지과	053-803-4923
인천광역시	기업지원과	032-440-4267
광주광역시	전략산업과	062-613-3853
대전광역시	기업지원과	042-270-3642
울산광역시	경제정책과	052-229-2732
세종특별자치시	지역경제과	044-300-4022
경기도	경제정책과	031-8008-4585
강원도	에너지자원과	033-249-2848
충청북도	미래산업과	043-220-3454
충청남도	일자리경제정책과	041-635-3318
전라북도	민생경제과	063-280-3233
전라남도	일자리창출과	061-286-3751
경상북도	민생경제교통과	053-950-2481
경상남도	경제정책과	055-211-2646
제주특별자치도	경제정책과	064-710-2512